

ESG 관련 투자계약의 법적 분쟁 사례와 쟁점*

장 윤 제**

< 목 차 >

I. 서론	III. 해외의 사례
II. 국내의 사례	IV. 쟁점의 검토
	V. 결론

[국문초록]

지속가능금융의 발달에 따라 ESG를 바라보는 관점은 기업 운영뿐만 아니라 기업의 프로젝트 및 그와 관련된 금융제공에도 적용되고 있다. 향후 금융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사업과 투자대상 프로젝트의 ESG 위험 및 성과가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에는 최근 친환경 사업을 표방하는 국내 기업이 해외 가스전 개발 사업에 합작투자자로 참여한 사업에 대해 마찬가지로 친환경 사업 투자를 선언한 국내 금융기관이 금융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이 사업에 국내의 직간접적 이해관계자가 환경 및 인권 침해에 관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사례를 검토하고, 쟁점으로 탄소배출로 인한 광역적 대기오염과 이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해 직접적으로 기업 또는 금융기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기업의 해외 사업에서 환경 및 인권에 대한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국내 본사에 대해 제소가 가능할 것인지, 금융의 수익자 또는 기업의 주주가 해당 사업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제소가 가능한지, 금융회사 또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한 선언이 실제 관행과 괴리되는 경우의 그린워싱 우려가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그에 관한 최근의 해외 사례를 확인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위의 쟁점과 관련하여, 현재의 국내법상 쟁송으로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해외에서는 각 쟁점별로 쟁송이 나타나고 있으며 법리의 발전 가능성이 관찰된다. 특히 ESG 경영을 표방하는 회사가 늘어남에 따라 그린워싱의 이슈도 늘어날 것이고,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이사회가 직접 ESG를 관리함에 따라 이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의 가능성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ESG 이슈가 점점 확대되고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그 중요성이 더해짐에 따라, ESG 이슈는 향후 쟁송이

* 이 논문은 2022년 11월 25일 은행법학회에서 발표한 글을 기초로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국내 사례 관련 결정문을 제공해주신 기후솔루션 관계자분들, 유익한 토론을 해주신 정준혁 교수님과 손재식 팀장님,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논문은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공식적 견해와 무관한 필자의 학술적 견해를 밝힙니다. 이 글의 모든 인터넷 페이지 최종 접속일은 2022년 12월 7일입니다.

** 법학박사,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ESG 연구소장, yjjang@shinki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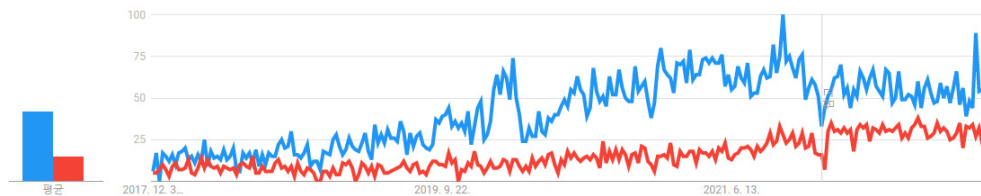
가능한 투자 및 계약의 중요 조건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I. 서론

ESG는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요소이며, 자본시장에서는 투자 의사결정 및 장기적인 재무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비재무적 요인을 집중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특히 전통적으로 ESG 지표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기업의 ESG 관행 및 현황을 관측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요소로, 기업보다는 투자자에게 널리 사용되었다.²⁾

1) KRX ESG 포털, “ESG의 개념”, <https://esg.krx.co.kr/contents/01/01010100/ESG01010100.jsp>;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ESG라는 용어는 처음 사용 시 금융기관이 환경 이슈, 사회적 이슈, 기업지배구조 이슈를 금융기관이 자산운용 및 증권 중개, 관련된 리서치 기능에 통합할 것을 제안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The Global Compact, Who cares wins, 2004, p.5; 또한 세계적으로도 ESG는 경영보다 투자에 집중된 단어임을 검색 트렌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은 구글 트렌드 분석을 이용하여 확인한 지난 5년간 전세계의 “ESG Investing”(청색)과 “ESG Management”(적색)의 검색어 동향 비교이다. <그림 2>는 국내의 “ESG 투자”(청색)와 “ESG 경영”(적색) 검색 트렌드 비교로, 해외와 상반된 “ESG”의 용례가 관찰된다.



<그림 1> 최근 5년간 전세계 “ESG Investing”(청색), “ESG Management”(적색) 검색어 동향



<그림 2> 최근 5년간 국내 “ESG 투자”(청색), “ESG 경영”(적색) 검색어 동향

ESG 평가기관은 ESG 지표 확인에 따른 평가결과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급화하거나 세부 리서치 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지수를 제공하기도 하며, 투자자는 이를 재무적 지표와 결합하여 기업의 가치를 표상하는 증권인 주식 투자에 이용하였다.

그러나 지속가능금융의 발달에 따라 ESG를 바라보는 관점은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대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도 적용되고 있다.³⁾ 특히 인프라투자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의 ESG 관점은 기업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에서의 환경, 사회적 영향을 바라보게 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금융제공 또는 금융상품이 실제적, 잠재적으로 미치는 환경적, 사회적 영향 역시 금융소비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기업 자체의 ESG 성과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업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 및 투자하는 인프라의 위험과 성과 역시, 그 운영과 책임의 주체는 기업이 될 것이다.

최근 지속가능성을 테마로 추구하는 사업은 그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업 및 금융의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⁴⁾ 지속가능금융의 규모가 확대되고 투자 및 사업에서의 ESG 고려가 중요해짐에 따라, 금융기관과 기업 모두 투자대상 프로젝트 및 사업 참여에 있어 환경적·사회적 이슈를 주요하게 관리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ESG 투자와 이른바 ESG 경영은 기존에 기업 경영에서 내부 운영과 관련된 비재무적 위험과 성과만을 중요시하였지만, 향후 금융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사업과 투자대상 프로젝트의 ESG 위험 및 성과가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최근에는 친환경 사업을 표방하는 국내 기업이 해외 가스전 개발 사업에 합작투자자로 참여한 사업에 대해 마찬가지로 친환경 사업 투자를 선언한 국내 금융기관이 금융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이 사업에 국내외 직간접적 이해관계자가 환경 및 인권 침해에 관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이라고 한다.) 이는 최근 부상되고 있

3) 지속가능금융은 금융 부문에서 투자 결정을 내릴 때 ESG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및 프로젝트가 보다 장기적인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European Commission, “Overview of sustainable finance”, https://finance.ec.europa.eu/sustainable-finance/overview-sustainable-finance_en.

4)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도시 건설 프로젝트는 100% 재생에너지에 의한 운영을 표방하며 국내 다수 기업과 금융기관의 참여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환경 및 인권에 대한 영향이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그에 따른 장기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DW, “Saudi Arabia: Greenwashing or real change?”, 2021.4.11., <https://www.dw.com/en/cop26-saudi-arabias-climate-strategy-greenwashing-or-genuine-transformation/a-59704908>; Equal Times, “The Saudi government wants to build a ‘city of the future’ - is it really prepared to execute those that stand in its way?”, 2022.11.28., <https://www.equaltimes.org/the-saudi-government-wants-to?lang=en#.Y6f8mNXP2Uk>.

는 위장환경주의, 이른바 그린워싱 이슈와도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환경 및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사업뿐만 아니라 경영에도 직접적인 위험이 되어, 이른바 “ESG 리스크”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의 전개와 쟁점을 살펴보고, 사례에서 쟁점화된 각 사안과 관련하여 최근의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금융기관과 기업이 향후 ESG 관련 투자 및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국내의 사례 - C사의 합작사업에 A공사, B은행이 금융 지원으로 참여한 사례 -

1. 사실관계 및 신청내용

A공사와 B은행은 정부 출연금으로 운용자산이 이루어져 있으며, 국가재정법상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C사는 민간 도시가스판매회사이며, 기존의 지역도시가스회사를 인수하며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는 민간 LNG화력발전사업과 해외 가스전 개발사업 및 LNG 해상운송, 터미널운영업을 병행하고 있다.⁵⁾

C사는 2012년 6월경 미국 D사와 호주 E사로부터 바로사 가스전의 지분 37.5%를 인수하였다. 이후 C사는 매장량 평가, 인허가 및 설계 작업 등 개발 준비 절차를 진행하였고, 2021년 3월경 바로사 가스전에 대한 최종 투자의사결정을 공표하였다. C사는 2025년부터 생산되는 연간 130만 톤의 LNG를 국내에 도입하고, 국내 도입물량 중 일부는 LNG 발전에, 일정 부분은 수소 생산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⁶⁾

C사는 A공사에 보증신청을 진행하였으며, A공사는 C사가 국제 환경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였다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B은행은 2021년 3월 3억 달러의 참여의향서를 발급하였으며, A공사가 사업에 보증할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결정할 것을 밝혔다. 다만 B은행은 여신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안전 의결을 보류하기로 하였으며, A공사는 이사회 승인을 3월 말에 완료하였다.⁷⁾

국내 환경단체 소속 1인과 호주 환경단체 소속 원주민 3인은 A공사와 B은행의 금융제공

5) 채권자 강 **등의 투자계약등체결금지가처분신청, 4-5면, http://climatecasechart.com/wp-content/uploads/sites/16/non-us-case-documents/2022/20220323_16485_petition.pdf

6) 위의 자료, 6면.

7) 위의 자료, 6-7면; 뉴스펍킨, “SK 호주 가스전 투자 멈춰달라” 가처분신청 기각, 2022.5.26.,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43>.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강행될 경우, 환경권에 기한 건강권 및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받게 되며 호주 원주민 3인의 점유권을 침해하고, 이 공사의 제도정책성과 재무적 타당성의 결여로 인하여 향후 채무불이행 및 이에 따른 손해의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며 환경권, 방해배제청구권, 기금집행 및 재정지원 받는 자에 대한 시정요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이 투자계약의 체결을 금지할 것에 대한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였다. 특히 가처분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가스전 개발사업의 금융제공 및 착공이 이루어지면 각 당사자의 손해발생이 너무 커지고 타 금융기관 및 호주 정부, S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가스전의 가동을 중지시키거나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2. 가처분 신청의 원인

2.1. 환경권 침해 및 환경오염

신청인은 가스전 개발 사업 시 가스의 채굴 및 처리, 액화, 운송, 연소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며, 천연가스인 메탄 배출 및 이산화탄소의 배출, 에너지 소비에 따른 상당량의 이산화탄소 발생을 지적하였다.

C사는 가스의 생산, 가공, 운송에 연간 1,35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점을 K은행에 알렸으며, 가스의 채굴 및 처리, 액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350만 톤의 이산화탄소 가운데 약 210만 톤을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로 포집하여 타 가스전에 저장하고, 다른 이산화탄소 분량은 CCS 사업을 통해 확보한 상쇄배출권으로 충당하겠다고 하였다.⁸⁾

그러나 신청인은 먼저 바로사 가스전은 다른 가스전에 비해 높은 비중의 이산화탄소가 있어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되며, CCS 기술 적용에 따른 800km 파이프라인의 설비 구축 등 및 운영으로 전력 및 에너지 사용이 있어 추가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이 예측되므로 감축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설치되는 파이프라인이 멸종위기종 바다거북 서식지를 가로지르도록 설계되어 있어, 주민들의 생계 및 생활에 영향을 주고 그에 따른 현지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A공사는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친환경 사업만 지원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는데, 신청인은 이 공표와 이 사건 개발사업 금융제공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⁹⁾

8) 앞의 투자계약등체결금지가처분신청, 9-10면.

9) 앞의 투자계약등체결금지가처분신청, 9-11면.

2.2. 원주민 의견 수렴절차의 미비

신청인은 C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들이 근교(약 6km) 거주 원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신청인에 따르면 이는 “UN 원주민 권리 선언”¹⁰⁾에 위배되며, 호주의 규제에 따라 요구되는 이해관계자 협의 요건¹¹⁾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12월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는 호주의 E사는 원주민 협의 미비로 인하여 환경 승인이 유효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여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¹²⁾

또한 A공사와 B은행은 국제 환경 가이드라인인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의 환경, 사회적 성과표준¹³⁾ 및 적도원칙을 채택하였는데,¹⁴⁾ 신청인은 이 사건 사업이 해당 원칙과 가이드라인의 원주민 존중 및 이해관계자 협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추가적으로 신청인은 바로사 가스전은 인도네시아와 호주의 소유권 분쟁 여지가 있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국제적 분쟁 위험지역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것인 바 금융지원이 부적절하다고도 주장하였다.¹⁵⁾

- 10) 원주민 권리 선언(또는 선주 민족 권리 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은 2007년 UN 총회에서 143개 국가 찬성, 4개 국가 반대, 11개 국가 기권으로 채택되었으며, 토착민의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인권 기준과 기본적 자유를 설명한다.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https://www.un.org/development/desa/indigenouspeoples/declaration-on-the-rights-of-indigenous-peoples.html>.
- 11) “In the course of preparing an environment plan, or a revision of an environment plan, a titleholder must consult each of the following (a relevant person): (e) any other person or organisation that the titleholder considers relevant.”, Offshore Petroleum and Greenhouse Gas Storage (Environment) Regulations, (Part 2—Environment plans, Division 2.2A—Consultation in preparing an environment plan, 11A, (1).
- 12) Reuters, “Australia court ruling on Santos raises risks for offshore gas projects”, 2022.2.2.,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australia-court-rejects-santos-bid-resume-barossa-gas-drilling-2022-12-02>.
- 13) E&S Performance Standards, 환경 및 사회적 위험 관리에 대한 IFC 고객의 책임을 정의하는 표준으로, 2012년 이후 IFC의 초기 신용 검토 프로세스를 거치는 프로젝트의 모든 투자 및 자문고객에게 적용된다. 위험관리, 노동, 자원효율성, 지역사회, 토지, 생물다양성, 원주민, 문화유산 등의 분류에 따른 표준으로 구분된다. IFC, E&S Performance Standards, 2012, https://www.ifc.org/wps/wcm/connect/Topics_Ext_Content/IFC_External_Corporate_Site/Sustainability-At-IFC/Policies-Standards/Performance-Standards.
- 14)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은 프로젝트에서 환경 및 사회적 위험을 결정, 평가, 관리하기 위한 금융 산업 벤치마크로, 금융 기관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할 때 환경 및 사회적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한 공통 기준 및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EQUATOR PRINCIPLES, “The Equator Principles”, <https://equator-principles.com>.

2.3. 사업의 불확실성 및 비경제성

신청인은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에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천연가스, 석유를 포함해 화석연료에 대한 신규 투자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발표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IEA에 따르면 천연가스의 수요는 2050년까지 55%가량 감소 예정이며,¹⁶⁾ 이에 따라 이 사건 금융지원은 재무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¹⁷⁾

S사는 CCS 기술을 이용하므로 화석연료 감축의 추세와는 무관할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신청인은 현재까지 CCS 기술은 자금 투입 대비 기술적 한계가 심해 경제성이 떨어지며 현재의 기술로 S사가 계획하는 바는 선례가 없고 사업 참여회사의 경험이 없으며 실현 가능성이 없어 성공적 진행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하였다.¹⁸⁾

또한 신청인은 호주 E사가 2021년 12월 기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16개의 주요 인허가 중 3건만을 승인받았으므로, 나머지 승인절차를 구비하지 못하여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¹⁹⁾

3. 법원의 결정

3.1. 피보전권리로서의 환경권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헌법에 명시된 환경권에 관한 규정이 환경정책기본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의 국가의 책무로 구체화되어 있고 A공사와 B은행의 설립목적이 사실상 국가기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다. 또한 헌법상 환경권은 사법상 권리로 주장하기 위해 구체화된 법률이 필요하지만, 대기는 타 환경요소와 달리 생존의 필수재이므로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취지와 조리에 비추어 대기오염의 피해를 받는 자가 대기오염을 초래시키는 자에게 금지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 사법상 권리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깨끗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권리 내지 환경이익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관계법령의 규정 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보전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²⁰⁾²¹⁾

15) 앞의 투자계약등체결금지가처분신청, 12-13면.

16) IEA, Net Zero by 2050 -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 Sector, 2021, p.21.

17) 앞의 투자계약등체결금지가처분신청, 14면.

18) 앞의 투자계약등체결금지가처분신청, 14-15면.

19) 앞의 투자계약등체결금지가처분신청, 15면.

3.2. 점유권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에 대한 판단

신청인 중 3인은 바로사 지역 인근에 거주하여, 가스전 설립에 따른 오염이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므로 점유권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금지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채권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고 있음을 소명하기 부족하며, A공사와 B은행은 사업의 주체가 아니고 금융지원 의사를 밝힌 상태에 불과하므로 채권자의 소유권 내지 환경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²²⁾

3.3. 기금집행 및 재정지원 받는 자에 대한 시정요구권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국가재정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A공사와 B은행이 아직 금융지원을 실행하지 않았으므로, 지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보전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²³⁾

3.4.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법원이 바로사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금지하더라도 S사가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며, K공사와 K은행이 금융지원을 하지 않아 S사가 사업에서 제외되더라도 타 기업이 다른 국가의 사업자를 끌어들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향후 위법성이 발견된다면 호주에서의 사법절차를 통하여 이를 다룰 기회가 남아있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²⁴⁾

4. 사례의 쟁점

위에서의 청구취지 및 법원의 결정을 종합하면,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쟁점은

① 탄소배출로 인한 광역적 대기오염과 이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해 직접적으로 기업 또는 금

20) 대법원 1995. 5. 23. 94마2218 결정.

2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2022. 5. 20. 2022카합33 결정, 4-5면.

22) 위의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5면.

23) 앞의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5-6면.

24) 앞의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6-7면.

용기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② 기업의 해외 사업에서 환경 및 인권에 대한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국내 본사에 대해 제소가 가능할 것인지,

③ 금융의 수익자 또는 기업의 주주가 해당 사업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제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①~③ 항을 종합하여, (비록 법원이 이를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청구에서의 피보전권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④ 금융회사 또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한 목표 또는 선언이 금융투자대상 또는 기업의 실제와 괴리되거나 불확실할 때, 특히 밸류체인에서의 환경 또는 인권 관련 위협으로 인하여 실제 목표가 이행될 수 없을 때 밸류체인의 본사에 대한 위협 전이로 인한 위장환경주의, 이른바 그린워싱의 우려가 타당한지에 관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 및 인권, ESG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사업의 확실성과 경제성을 담보할 것인가에 관한 쟁점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기후변화 및 인권 이슈, ESG를 한 구획에 묶을 것이 아니라 각 이슈와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르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법학적으로 논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에 아래에서는 ①~④의 각 쟁점에 대하여 유사한 쟁점이 쟁송으로 다루어진 해외 사례를 확인하여 국내의 금융기관 및 기업이 주의할 점을 파악한다.

III. 해외의 사례

1. 환경 및 건강권에 따른 구체적 권리를 인정한 사례

1.1. Urgenda Foundation v. State of the Netherlands²⁵⁾

1.1.1. 배경 및 당사자의 주장

네덜란드는 EU회원국으로서 EU차원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였으며, 이에 따른

25) 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 “Urgenda Foundation v. State of the Netherlands”, <http://climatecasechart.com/non-us-case/urgenda-foundation-v-kingdom-of-the-netherlands>; 이 판례를 상세히 분석한 선행연구로 이재희, “기후변화에 대한 사법적 대응의 가능성: 기후변화 헌법소송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82-2호, 한국법학원, 2021, 342-390面; 배연재, “국내 기후변화 소송에서 국제규범의 역할: 네덜란드 판결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67권 제2호, 한국국제법학회, 2022, 37-82面; 박시원, “기후변화와 인권침해 소송 -Urgenda 고등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환경법과 정책 제23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37-69面.

네덜란드 할당 감축목표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14-17% 감축, 2005년 대비 16-21% 감축이었다. 또한 이후 네덜란드는 자체적으로 2020년 국가 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약 30%로 상향하여 설정하였다. 그런데 2010년 새로 구성된 정부는 2020년까지의 단기 감축목표를 17%로 후퇴시켰다. 이에 네덜란드 환경 단체인 Urgenda Foundation(이하 “우르겐다”라 한다.)는 감축목표를 최대 40%까지 상향할 것을 요청하였고, 환경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정책을 변경하지는 않았다.²⁶⁾

이에 우르겐다는 886명의 개인을 대표하여 네덜란드 정부에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말까지 1990년 대비 40% 이상(최소 25%) 감축하거나, 예비적으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최소 1990년의 40% 이상 감축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불법행위의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국가로 하여금 ① 우르겐다가 앞에서 요구한 감축목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② 우르겐다가 지정할 6개 이하의 전국 일간지에 답변의 내용을 공고하며, ③ 웹사이트에 이를 2주 동안 게시하고, ④ 이 절차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불하도록 청구하였다.²⁷⁾

우르겐다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2015년 현재 온실가스 배출 수준,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 수준은 산업혁명 대비 2도 이상의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거나 위협하며, 이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주의를 행사(due care exercised in society)할 의무에 반하여 위법하다. 더불어 이는 ECHR(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 유럽 인권 협약) 제2조(삶을 보호받을 권리) 및 제8조(사적인 삶 및 가정을 존중받을 권리)에서 보장하는 권리 침해이다. 네덜란드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과도하여 임박하고 위험한 기후변화에 기여하며, 이는 네덜란드의 온실가스 배출을 합법적이지 않게 한다. 특히 정부와 정부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배출량은 주권 국가로서의 통제의 문제로, 정부는 “체계적 책임”을 가진다.²⁸⁾

특히 우르겐다는 네덜란드 헌법 제21조에서 정부는 환경의 보호와 개선을 통해 거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책임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직접 기후변화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TFEU(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 운영조약) 등 국제법에 따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감축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우르겐다가 청구한 사항을 달성하지 못하는 현재의 기후정책으로는 주의의무(duty of care)를 다하지 못하므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⁹⁾

26) The Hague District Court, ECLI:NL:RBDHA:2015:7196(English Translation, unauthoritative.), 2015, pp.34-35; 이재희, 위의 논문, 358-359면.

27) The Hague District Court, op. cit., pp.28-29.

28) Ibid, p.29.

29) Ibid, pp.29-30.

이에 대하여 네덜란드 정부는 절차법, 실체법상 다양한 이의를 통해 항변하였다. 먼저 네덜란드 정부는 기후변화는 다른 나라와 영향을 주고 받으므로 우르겐다의 청구가 국내 법원의 관할에 적격하지 않으며, 정부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우르겐다에 대한 어떠한 실제적 위협이 되는 불법행위가 있지 않으므로 우르겐다에 당사자적격이 충분치 않다고 항변하였다. 또한 네덜란드 정부는 지구온난화 저지 목표를 현재의 정책을 통해서도 실현할 수 있음과 더불어 배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항변하였으며, 네덜란드가 구체화한 기후정책은 ECHR 제2조와 제8조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 전체에 비하면 네덜란드가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³⁰⁾

1.1.2. 재판의 경과

1심에서 헤이그 법원은 먼저 국제법의 직접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국내법상 네덜란드의 의무를 판단하였다. 먼저 법원은 법원이 기후 관련 문제에 독자적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인정하고, 과학 기반으로 발효된 UN 기후변화협약 및 그에 따른 IPCC 보고서들이 현재의 기후 과학을 대변함을 명시하고 이를 인용하여 현재 기후변화의 상태와 목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법적 의무에 관해, 헌법 제21조의 의무는 주의의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수행 방식은 정부의 재량권에 의해 다루어진다고 보며, UNFCCC 및 교토의 정서, “No Harm” 원칙³¹⁾은 다른 국가에 대한 국가의 의무만 구속하며 시민(사인 및 법인)에 대한 관계를 구속하지 않으므로 우르겐다는 이를 의거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국제법상 의무는 국내법상 반영되며, 네덜란드는 국내법을 국제법상 목표에 부합하게 조정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헤이그 법원은 개인적 권리 침해 여부에 관해, 우르겐다가 네덜란드 헌법 21조와 “No Harm” 원칙, UN 기후변화협약, TFEU 등을 의거하여 국가의 법적

30) Ibid, p.30.

31) No Harm 원칙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유엔 헌장과 국제법 원칙에 따라 국가는 자체 환경 및 개발 정책에 따라 자체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가 있으며, 관할권 또는 통제 내 활동이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지역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리오 원칙 6;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한 환경 피해의 위험을 방지, 감소 및 통제할 의무가 있는 관습 국제법의 널리 인정된 원칙”, 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7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275-285; Patricia Birnie & Alan Boyle, Catherine Redgwell,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 3r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p.143-152; UN Environment Programme, “No Harm Rule”, <https://leap.unep.org/knowledge/glossary/no-harm-rule>에서 재인용.

의무를 도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며, ECHR 2조와 8조에 의거하여 직접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고 보았다.³²⁾

다만 이러한 원칙 및 규범들은 내용과 목적은 국가가 우르겐다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하는지에 대한 재량권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헤이그 법원은 국가의 재량권은 무제한적일 수 없으며, 기후변화와 관련된 원칙들을 벗어나 재량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그 정당성을 국가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칸쿤 협약에 의하면 네덜란드를 포함한 모든 국가가 국제적인 수준에서 더 많은 감축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따라 네덜란드의 기후변화에 대한 기여도가 0.5%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주의의무에 따른 예방조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네덜란드는 1인당 배출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경우 국외로 사업장을 이전할 가능성인 “탄소 누출”에 대해, 그로 인한 탄소 감축 효과의 감소는 현재 징후가 없다고 2014년 유럽위원회 발표에서 명시되었으며, 탄소배출량 감축에 따른 기업활동 감소의 우려에 대해 역시 인접한 국가에서의 사례가 없어 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불분명하다고 보았다.³³⁾

따라서 헤이그 법원은 주의의무에 비추어 볼 때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그 유해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기후변화 완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에 따르면 전체 배출량에 네덜란드가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감축 목표의 저하가 경제적으로 매우 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아니므로, 법원은 우르겐다의 청구와 같이 현재의 감축 목표가 위법임을 판결하여 청구를 인용하였다.³⁴⁾ 이것은 사법적으로 온실 가스 배출 제한 의무를 지우는 기념비적 판결로 알려져 있다.³⁵⁾

네덜란드 정부는 29건의 근거를 들어 항소하였으며, 우르겐다는 ECHR 제2조와 제8조를 직접 의거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항소하였다. 2018년 10월 9일, 헤이그 항소법원은 기존 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함과 더불어, 지방법원에서 기각한 청구이유인 네덜란드 정부의 ECHR 제2조와 제8조에 따른 주의 의무를 인정하여 정부가 이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결론지으며 지방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였다. 동 재판소는 생명권을 보호하는 ECHR 제2조와 사생활, 가정 생활, 가정, 서신 왕래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ECHR 제8조에 따른 우르겐다의 주장을 인정하였으며, 네덜란드 정부가 기후 변화의 실제

32) The Hague District Court, ECLI:NL:RBDHA:2015:7196(English Translation, unauthoritative.), 2015, p.42.

33) Ibid, p.55.

34) Ibid, p.49.

35) The Guardian, “Dutch government ordered to cut carbon emissions in landmark ruling”, 2015.6.24.,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5/jun/24/dutch-government-ordered-cut-carbon-emissions-landmark-ruling>.

위험으로부터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하급 법원의 결정이 입법의 기능을 하여 법원의 역할을 위반한다는 정부의 주장 역시 기각하였으며, ECHR 제2조와 제8조를 포함하여 네덜란드가 당사국인 조약의 직접적인 효력을 갖는 조항들을 적용할 의무를 확인하였다. 또한 법원은 TFEU 제193조에서 회원국이 EU 전체보다 더 야심 찬 기후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적응 조치가 온실 가스 배출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주의의무를 보상 할 수 없으며 문제의 세계적 성격이 네덜란드 정부의 행동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³⁶⁾ 네덜란드 정부는 이 결정에 항소했고, 2019년 12월 20일 네덜란드 대법원은 항소법원의 판결을 지지하여 판결을 확정하였다.³⁷⁾

1.2. Milieudefensie et al. v. Royal Dutch Shell plc.³⁸⁾

1.2.1. 배경 및 당사자의 주장

2019년 4월 5일, 환경 단체 Milieudefensie, 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와 기타 NGO로 구성된 공동 원고³⁹⁾는 Shell이 기후 변화에 기여한 바가 네덜란드 법률 및 인권 의무에 따른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고 제소하였다. 원고는 Royal Dutch Shell (이하 “RDS”라 한다.)이 파리 기후 협정에 따라 2010년 수준에 비해 2030년까지 CO₂ 순 배출량을 45%, 2050년까지 0으로 줄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구하였다.⁴⁰⁾

이 사안에서 원고의 주장은 기후 변화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부적절한 조치가 시민들에 대한 보살핌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앞의 Urgenda Foundation v. State of the Netherlands 판결을 기반으로 한다. RDS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는 파리 협정의 목표와 기후 변화의 위협에 관한 과학적 증거를 고려할 때 RDS가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36) The Hague Court of Appeal, ECLI:NL:GHDHA:2018:2610(English Translation, unauthoritative.), 2018.

37) Supreme Court of the Netherlands, ECLI:NL:HR:2019:2007(English Translation, unauthoritative.), 2019; 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 “Urgenda Foundation v. State of the Netherlands”, <http://climatecasechart.com/non-us-case/urgenda-foundation-v-kingdom-of-the-netherlands>.

38) 이 판례를 상세히 분석한 선행연구로 배연재, “국내 기후변화 소송에서 국제규범의 역할 : 네덜란드 판결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67권 제2호, 한국국제법학회, 2022, 37-82면.

39) ActionAid NL, Two ENDS, Fossilvrij NL, Greenpeace NL, Young Friends of the Earth NL, Waddenvereniging)와 17000명 이상의 시민.

40) File number 90046903(Unofficial translation of the Dutch original), 2019, p.204.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전의 판결의 법리를 민간 기업 대상으로까지 확장하였다. 특히 원고는 네덜란드 민법 제6조 162항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복구의 의무 및 그 의무를 해석할 수 있는 불문법상 기준으로 ECHR 제2조와 제8조, RDS가 채택한 UN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 등 연성규범 등에 근거하여 RDS가 기후변화를 예방할 수 있는 기업정책을 수립할 불문법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⁴¹⁾

2019년 11월, RDS는 방어 성명서를 제출하였다. RDS는 다양한 방어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다른 방어 수단 중에서도 특히 RDS가 배출 상한선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불문법상 기준에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법적 기준이나 규정 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이 너무 일반적이어서 ECHR 제2조와 제8조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RDS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감축 목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였다.⁴²⁾

1.2.2. 재판의 경과

2021년 5월 26일, 헤이그 지방 법원은 RDS에 자체 배출량 및 최종 사용 배출량을 포함한 모든 활동에서 2019년 대비 2030년까지 배출량을 45% 줄이도록 명령하였다. 법원은 Shell에게 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상의 Scope 1, 2, 3⁴³⁾ 탄소 순배출량의 연간 총량을

41) The Hague District Court, ECLI:NL:RBDHA:2021:5337, 2021, pp.21-29; 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 “Milieudefensie et al. v. Royal Dutch Shell plc.”, <http://climatecasechart.com/non-us-case/milieudefensie-et-al-v-royal-dutch-shell-plc>.

42) ROYAL DUTCH SHELL PLC., STATEMENT OF DEFENCE, 2019.

43) Scope 1, 2, 3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환경부, 기업 탄소경영 가이드라인, 2010, 20면.

명칭	내용
Scope 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 에너지 연소, 산업 공정 등에서의 온실가스 직접 배출
Scope 2	전기, 스팀 등 에너지 사용에 의한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 전기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은 사용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 공급처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간접 온실가스 배출에 해당함
Scope 3	에너지 이외의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Scope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산출하며, 기업 배출량 산정은 일반적으로 Scope 1만을 산정하거나 Scope 2 부분을 함께 산출함 (선진기업은 Scope 3를 산정하기도 함)

2019년 수준에 비해 2030년 말까지 최소 45 % 감소하라고 명령하였다. 법원은 이 판결을 잠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했으며, 이는 사건이 항소되더라도 RDS가 감면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의미한다.⁴⁴⁾

법원은 네덜란드 민법 6장 162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불문법에 충돌하는 행동은 불법이라고 하였으며, 불문법 주의의무의 해석에 ECHR 2조와 8조 및 국제적 인권 관련 연성규범을 고려하여 RDS가 Scope 3 배출량에 책임이 있으며, 특히 화석 연료를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의 경우와 같이 Scope 3 배출량이 회사 탄소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주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⁴⁵⁾

또한 법원은 EU 배출권 거래제(EU Emissions Trading System, EU ETS)를 통해 법원이 명령한 추가 배출량 감축을 이행했다는 Shell의 주장에 대해, EU ETS는 Shell이 담당하는 유럽 내 배출량 중 일부에만 적용되고 EU 외부의 배출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장을 기각하였다. 또한 감축 의무가 다른 회사에 의해 대체 될 것이기 때문에 감축의 효과가 없다는 RDS의 주장 역시 기각하였다. 법원은 RDS가 글로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RDS가 통제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RDS 그룹의 배출과 관련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⁴⁶⁾ 2022년 7월 20일, RDS는 판결에 항소하였다.⁴⁷⁾

2. 해외 문제에 대한 본사 소송 제기 사례

2.1. Friends of the Earth France et al v. Total

Friends of the Earth France를 위시한 프랑스 및 우간다의 인권 및 환경보호 6개 단체는 2019년 6월 24일, 프랑스 최대 에너지 기업 Total사에 우간다 Tilenga 사업과 우간다 및 탄자니아 EACOP(East African Crude Oil Pipeline)사업 관련 프랑스 실사의무화법 위반 혐의로 경고장을 발송하였고, 동년 10월 23일 인권 및 환경보호 의무 불이행에 따른 프랑스 실사의무화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피고인 Total이 우간다 Tilengaz 지역에 매장된 약 10억 배럴 가량의 원유 시추를 위해 400개 가량의 유전을 개발하였으며, 매일 20만 배럴의 원유를 1,445km의 송유관을 통해 탄자니아 항구로 운송하는 사업을 진행중인

44) The Hague District Court, ECLI:NL:RBDHA:2021:5337, 2021, pp.44-45.

45) Ibid, pp.26-27.

46) Ibid, pp.27-28.

47) Shell Global, "Shell confirms decision to appeal court ruling in Netherlands climate case", <https://www.shell.com/media/news-and-media-releases/2021/shell-confirms-decision-to-appeal-court-ruling-in-netherlands-climate-case.html>.

데, 사업추진을 위한 원주민으로부터의 토지취득 과정에서 강압적인 억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적절한 수준의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주민 수만명은 급작스러운 토지, 집, 농지, 작물 등의 소유권 상실로 인해 일반적인 생활 및 향후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하며,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학생의 교육 기회 박탈 우려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환경 측면에서 원고는 송유관이 국립공원(Murchison Falls National Park)과 나일강 하류 지역 등 생태계의 다양성 및 수자원과 밀접하고 지진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통과함에 따라 이로 인한 환경변화·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자연재해 발생시 환경파괴 확대 위험이 존재하여 생물다양성 저하 및 지구온난화 초래 등 기후변화 우려를 제기하였다.⁴⁸⁾

이 소송은 다국적 기업의 실사 의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최초의 법적 조치로, 먼저 관할권이 문제되었다. Total은 기업실사의무는 기업의 경영사항이므로 상사법원을 관할로 할 것을 요청하여 인용되었으나, 원고는 프랑스 실사의무화법에 따라 제기된 사건은 인권과 지구의 보호와 관련이 있으므로 상업적 분쟁으로 축소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항소하였다. 약 2년간의 절차법에 관한 분쟁 끝에 대법원은 상사법원의 관할권을 거부하고 민사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였다.⁴⁹⁾

2.2. ECCHR, ProDESC v. Electric de France

2013년, 멕시코는 재생에너지회사의 사적 투자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였다. 2015년 프랑스의 에너지 기업인 Electricité de France(이하 “EDF”라 한다.)와 그 멕시코 자회사 EDF Renewable을 포함하여 이미 풍력발전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현지 멕시코 자회사들은 멕시코 원주민 커뮤니티인 Unión Hidalgo의 땅에 풍력 발전 단지(Gunaá Sicarú)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정부의 인허가를 받기 시작하였다.⁵⁰⁾ 그러나 토지 사용에 대해 토착민 공동체와의 적절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2020년 10월 13일 Unión Hidalgo와 멕시코 인권 단체 ProDESC, 베를린에 본사를 둔 유럽 인권 센터(European Center for Constitutional and Human Rights, ECCHR)의 대표자와 Unión Hidalgo의

48) 한국무역협회, EU 공급망실사지침 주요내용과 기업사례, 2022, 6-7면; Lucie Chatelain, “기업에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책임을 부과한 프랑스의 실천감독의무법”, 국제노동브리프 2021년 11월호, 노동연구원, 2021, 26면.

49) Les Amis de la Terre France, “Victory! Total Uganda case: the French Supreme Court recognizes the jurisdiction of the civil court”, 2021.12.15., <https://www.amisdelaterre.org/communique-presse/victory-total-uganda-case-the-french-supreme-court-recognizes-the-jurisdiction-of-the-civil-court>.

50) ECCHR, ProDESC, TERRE SOLIDAIRE, CASE REPORT –Wind farm in Mexico: French energy firm EDF disregards indigenous rights, 2020. p.2.

토착 Zapotec 커뮤니티 대표는 EDF를 상대로 프랑스에서 프랑스 실사의무화법(French Corporate Duty of Vigilance Law)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EDF가 프로젝트로 인한 향후 원주민 인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프랑스 실사의무화법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법원에 금지 명령을 구하였으며, 이미 프로젝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⁵¹⁾

특히 원고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협약 169조에 따라 EDF는 원주민과 자유롭고, 프로젝트에 우선하며, 충분한 정보에 따른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 점이 미흡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지역사회 내 폭력적 분쟁을 불러일으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EDF는 UNGP에 기반한 프랑스 실사법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및 운영에 있어 인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① 위험성 평가, ② 자회사 및 거래처, 공급망에 대한 정기적 평가, ③ 위험 완화 및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④ 노동조합과의 연계를 통한 공급망 신고제도 운영, ⑤ 효과성 평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원고는 EDF의 이러한 체계 준수가 미흡했다고 주장하였다.⁵²⁾

이에 대해 EDF는 멕시코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UNGP를 준수하고 있다고 하며 제기된 협의를 부인하였으며, 파리 지방법원은 절차적 미비를 이유로 운영중단 요구 소송을 기각하였다.⁵³⁾

2021년 9월 27일, 유사 사례로 멕시코 법원은 Juchitan de Zaragoza Farming Community가 지역사회의 토지에서 협의가 미흡한 풍력발전소 건설을 금지하였고, EDF는 이 결정이 사유지에 관한 것이므로 Gunaá Sicarú의 개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⁵⁴⁾ 그러나 2022년 6월 2일, 멕시코 에너지부(SENER)는 EDF Renewables와 멕시코 국영 전력회사인 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CFE)가 체결한 전기 공급 계약을 취소하였다. 이에 EDF의 풍력단지개발은 취소되었다.⁵⁵⁾

51)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EDF lawsuit (re indigenous rights in Mexico, filed in France)”, <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en/latest-news/edf-lawsuit-re-indigenous-rights-in-mexico-filed-in-france>.

52) ECCHR, *op. cit.*, pp.4-6.

53) 한국무역협회, 앞의 보고서, 9-10面.

54) WINDPOWER MONTHLY, “EDF denies Mexican court ruling over indigenous land challenge will affect wind farm”, 2021.11.27, <https://www.windpowermonthly.com/article/1728377/edf-denies-mexican-court-ruling-indigenous-land-challenge-will-affect-wind-farm>.

55) MEXICO BUSINESS NEWS, “CFE Cancels Gunaá Sicarú Wind Farm Contract in Oaxaca”, Wed, 2022.8.6., <https://mexicobusiness.news/energy/news/cfe-cancels-gunaá-sicarú-wind-farm-contract-oaxaca>.

3. 주주 및 수익자에 의한 소송 사례

3.1. Ewan McGaughey et al v. Universities Superannuation Scheme Limited

2021년 10월 26일, Neil Davies 박사, Ewan McGaughey(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대학교 교직원 사적연금기금의 수탁자인 USSL(University Superannuation Scheme Limited)의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USSL은 영국에서 가장 큰 민간 연금 제도로서 간주되며, 대표소송의 청구인은 USS 연금 기금의 기금 적립자이자 수익자이다. 이 소송은 상법상 주주대표소송과 요건이 동일하지는 않은 영국법상 소송으로,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2006년 영국 회사법 및 신인의무에 근거하여 이사의 의무 위반에 대해 기금 적립자이자 수익자가 제기한 다중대표소송이다.⁵⁶⁾

청구인은 ① 기금 적립구조의 변경이 성별 또는 연령, 인종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여 회사가 차별에 따른 이사의 신인의무 위반 등으로 소송을 당할 우려에 노출되어 있으며, ② 의무 해태 또는 의무 위반으로 자산운용의 비용이 1318% 증가하였고 총 운영비용이 20% 증가하였으며, ③ 화석 연료는 2017년 이후 최악의 실적을 거둔 자산군임에도 불구하고 전현직 이사가 화석 연료 투자 중단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지 못하여 회사의 성공을 계속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⁵⁷⁾

특히 청구인에 따르면 2021년 5월 4일 USS가 2050년 넷제로 목표를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이 없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기금의 재정적 위험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평가가 제공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기금 이사의 의무가 각각 ECHR 제2조와 제8조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사들은 파리 협정 준수 및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 추구, 수익자의 만족에 비추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인 방법은 화석 연료 매각을 위한 즉각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⁵⁸⁾

2022년 5월 24일, 고등법원은 USSL에 대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허가를 거부하였다. 이는 회사와 청구인이 입은 손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이사들이 이익을 위해 USSL의 재산을 편취한 고의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USSL이 규제를

56) 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 “Ewan McGaughey et al v. Universities Superannuation Scheme Limited”, <http://climatecasechart.com/non-us-case/ewan-mcgaughey-et-al-v-universities-superannuation-scheme-limited>.

57) The High Court of Justice, Claim Form CR-2021-001966, 2021.10.26., pp.1-2; The High Court of Justice, McGaughey v. USSL CR-2021-001966, 2022.5.24., pp.60-128.

58) The High Court of Justice, Claim Form CR-2021-001966, 2021.10.26., pp.32-33.

준수했기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일차적인 증거는 없었으며, 대표소송보다는 오히려 신탁법에 따른 소송이 적절하였을 것이라고 첨언하였다.⁵⁹⁾

2022년 6월, 청구인들은 항소 허가를 구하였으며 2022년 10월, 법원은 항소를 허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⁰⁾

3.2. ClientEarth v. Board of Directors of Shell⁶¹⁾

2022년 3월 15일, ClientEarth는 Shell의 주주이자 환경단체, 법률단체로서 영국 Shell의 이사회가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전략을 이행하지 못하여 회사법상 이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은 영국의 2006년 회사법 제172조 및 제174조에 근거한다. 2006년 회사법 제172조는 이사로 하여금 회사의 성공을 촉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식으로 행동할 의무를 부담시킨다. 또한 제174조는 이사가 합리적인 주의, 기술 및 근면을 행사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살핀 2021년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의 판결과 일관된 취지의 소송으로 볼 수 있다. 원고는 Shell이 2050년까지 넷제로를 선언하였지만, 분석에 따르면 오히려 2030년까지 4%의 배출량 증가가 예상되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⁶²⁾ Shell의 이사회는 원고가 청구를 제기하기 위한 법원의 허가를 구하기 전에 응답할 기회를 갖고 있으며, 그 이후의 경과를 알려지지 않았다.⁶³⁾

59) 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 “Ewan McGaughey et al v. Universities Superannuation Scheme Limited”, <http://climatecasechart.com/non-us-case/ewan-mcgaughey-et-al-v-universities-superannuation-scheme-limited>.

60) Ibid.

61) Shell은 2021년 12월 “Royal Dutch”를 뺀 Shell로 사명을 변경하고 헤이그에서 런던으로 본사를 이전하였다.

62) ClientEarth, “ClientEarth starts legal action against Shell’s Board over mismanagement of climate risk”, 2022.3.15., <https://www.clientearth.org/latest/press-office/press/clientearth-starts-legal-action-against-shell-s-board-over-mismanagement-of-climate-risk>.

63) 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 “ClientEarth v Board of Directors of Shell”, <http://climatecasechart.com/non-us-case/clientearth-v-board-of-directors-of-shell>.

4. 지속가능성 목표와 상태의 괴리에 관한 사례

4.1. Australasian Centre for Corporate Responsibility v. Santos

2021년 8월 25일, 호주 ACCR(Australasian Centre for Corporate Responsibility, 기업책임센터)은 Santos가 2020년 연차보고서에서 청정에너지를 제공한다고 표현한 부분 및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고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호주 2001년 회사법 1041H의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오표시 및 기만의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제공 금지 규정 및 호주 소비자법 18조 및 33조상 상행위 및 상품의 성질에 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일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 제공 금지 규정 위반으로 연방 법원에 제소하였다.⁶⁴⁾

ACCR은 연차보고서가 가스의 추출 및 처리에 상당한 양의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방출됨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천연가스의 최종 사용 역시 중요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함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Santos가 생산하지 않거나 생산할 의도가 없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대체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점 역시 Santos가 공개하지 않아 화석 기반 가스의 추출 및 그 사용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2020년 연차보고서에서 Santos는 넷제로 달성의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미래의 CCS 공정과 블루 수소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원고는 최근 연구는 블루수소 생산 역시 탄소 배출이 있으며 대부분의 CCS 프로젝트가 실패했고, 이 계획은 CCS 프로세스에 대한 다양한 비공개 절차 및 가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Santos의 계획상 2025-26년까지 가스 생산량을 늘릴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2030년까지의 10년 동안 배출량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⁶⁵⁾

ACCR은 2022년 8월 새로운 혐의를 제기하였다. 블루수소는 Santos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리며, CCS 기술은 상용 가능하지 않으며 모든 증가되는 배출량을 포집할 수 없기 때문에 CCS 기술을 포함한 블루수소를 청정에너지 또는 배출량 제로라고 표기하는 것은 오표시 또는 기만행위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Santos의 넷제로 주장은 2025년 이후의 배출량 증가를 설명하지 않으며, CCS는 배출량 감소가 아닌 상쇄에 대한 사항이고, CCS를 사용한 수소에 대해 Santos는 천연가스에 30~50%의 수소를 혼합할 것이라고 가정했지만 실제 10% 이상을 혼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Santos는 연방 법원에서의

64) ACCR, “Australasian Centre for Corporate Responsibility files landmark case against Santos in Federal Court”, <https://www.accr.org.au/news/australasian-centre-for-corporate-responsibility-files-landmark-case-against-santos-in-federal-court>.

65) Ibid.

법률문서 제공에 반대하였으며, 이에 현재 ACCR 및 Santos의 재판 경과는 더 이상의 관찰이 제한된다.⁶⁶⁾

4.2. Myers v. Starbucks Corp.

4.2.1. 배경 및 원고의 주장

2020. 2. 19. 로리 마이어스는 Mars, Quaker Oats, Starbucks에 대해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로서 캘리포니아 소비자 구제법(California Consumers Legal Remedies Act, CLRA) 위반 및 캘리포니아 불공정경쟁법(California's Unfair Competition Law, UCL) 위반으로 제소하였다. 원고는 스타벅스가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의 코코아 농장에서 20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참여하는 강제 아동 노동에 의존하는 시스템에서 의도적으로 코코아를 구매하므로 소비자를 오도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들은 모두 초콜릿을 판매하는 미국 기업으로, 코코아를 인도적으로 생산한 것처럼 광고한다. 예를 들어, Mars는 Dove Dark Chocolate 제품 뒷면에 Rainforest Alliance Certified™ 농장에서 코코아를 구입하여 공장에서 농장을 추적 가능하다고 표기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코코아 생산의 벤치마크가 되는 제3자인증이라고 적힌 Rainforest Alliance Certified™의 찰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Mars는 24%의 코코아 추적만이 가능하며, 이는 윤리적으로 조달된 콩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콩이 혼합되기 때문이다. Quaker Oats는 초콜릿 칩 츄이 바가 비영리단체 코코아 호라이즌을 통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공급된다고 주장하나, 코코아 호라이즌 농장의 26%만이 아동노동 방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스타벅스는 핫 코코아 믹스를 윤리적으로 조달된 코코아로 만들었다고 표시하며, "COCOA"로 알려진 내부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는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코코아를 사용하며, 이는 스타벅스도 인식하고 있다.⁶⁷⁾

4.2.2. 재판의 경과

재판부는 Mars의 Rainforest Alliance Certified™ 찰이 Mars의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는 마이어스의 주장이 구체적인 허위 진술을 식별하지 못하여 기각하였다. 또한 24%만이 추적

66) ACCR, "Australasian Centre for Corporate Responsibility expands landmark Federal Court case against Santos", <https://www.accr.org.au/news/australasian-centre-for-corporate-responsibility-expands-landmark-federal-court-case-against-santos>.

67) 536 F. Supp. 3d 657 (C.D. Cal. 2021)

가능하다는 사실이 추적 가능한 코코아를 구매한다는 데에 관하여 오포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웨이커 오츠가 Cocoa Horizons와 관계를 맺고 있으며 Cocoa Horizons가 지속가능하고 윤리적인 관행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이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판결했다. 스타벅스의 경우, 재판부는 마이어스의 주장이 충분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스타벅스의 환경 관련 절차가 코코아를 비윤리적으로 만들었다는 마이어스의 주장에 대해 ‘윤리적 조달’은 일반적으로 노동 관행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판결하였다.⁶⁸⁾

이에 대해 마이어스는 수정된 주장을 통해, 어떠한 초콜릿 회사도 강제노동이 없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공급된” 초콜릿이라는 광고는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스타벅스는 이에 마이어스가 광고의 사실 여부를 스타벅스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반론을 제기하였다. 마이어스는 이에 대해 초콜릿 무역에 있어 아동노동이 없기는 어려우며, 소비자는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민하여 윤리적이라고 하면 아동노동을 배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스타벅스와 마이어스는 절차법상의 문제로 소송을 이어나갔으며, 양 당사자는 2022년 9월 합의하였다.⁶⁹⁾

4.3. International Labor Rights Forum v. Bumble Bee Food LLC

범블비 푸드는 북미 지역의 주요 참치 통조림 제조업체이다. 범블비 푸드는 스스로 “공정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 안전에 있어 “최고의 모범 기준”을 따르고 있고, “지속가능한 어업의 챔피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노동권포럼(이하 “ILRF”라 한다.)은 범블비에 강제노동 및 작업안전 위반 사례에 대한 중대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범블비는 2020년 대만 소재 해산물 생산업체인 FCF Co.(이하 “FCF”라 한다.)에 인수되었으며, 인수되기 전에도 FCF를 통해 참치의 70~95%를 조달하였다. ILRF에 따르면 FCF의 공급망을 통해 생산되는 참치는 대부분 미국 정부기관에서 강제노동의 위험이 높다고 인식된 지역이다. ILRF는 범블비 및 공급업체이자 모회사인 FCF가 해산물 어획에 있어 불공정하고 위험한 관행을 지속하였음을 주장하였으며, 그린피스는 2021년 9월 다른 인권단체와 함께 미국 관세국경보호국에 FCF 공급망의 파괴적인 어업행위 및 인권 유린에 대한 의심을 보고하고 조사 및 수입 거부를 요청하였다. 또한 ILRF 따르면 범블비의 작업안전 정책 및 행동규범은 산업 주도 그룹에서 제정되어 최소한의 표준이기 때문에 ILO의 국제 어업 협약 등의 규정에 못 미치며 회사의 공급망 감사 역시 범위가 제한적이다. ILRF는 이에 범블비가 “최고의 모범 기준”을 준수하는 회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기만이라고 주장하였다.

68) Ibid.

69) Ibid.

콜롬비아 지역 소비자 보호법(District of Columbia Consumer Protection Act, CPPA)은 누구든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중요 사실을 오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CPPA에 따르면 소비자의 이익을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충분한 결합이 있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조직은 소비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다. 이에 ILRF는 2022년 5월 해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허위 마케팅 표현으로 범블비를 제소하였다.⁷⁰⁾

IV. 쟁점의 검토

1.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1.1. 기존 국제협약에 기한 구체적 청구권원 인정의 제한

살펴본 네덜란드의 두 가지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유럽인권협약의 직접 적용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인권침해를 주장할 권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EU와 같이 구속력이 강한 국제법과 불문법의 권역에 속해있지 않으며, 국제법은 국내 성문법으로 입법되어 효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유럽인권협약과 유사한 협약 또는 조약에 비준하더라도 이를 국내법에 의한 적용 없이 사인간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헌법상 권리는 사인간의 적용 시 간접적으로 구체적 법률에 따라 적용되며, 검토한 국내 사례에서도 확인되듯이 법원은 환경권에 관한 헌법상의 권리는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으면 청구권원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일관되게 판결되고 있다.⁷¹⁾ 이에 가치분사건의 신청인 역시 국내법상 법리에 기하여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⁷²⁾ 다만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을 통해서도 신청인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지역

70) ILRF, “Global Labor Justice - International Labor Rights Forum Sues Global Tuna Giant Bumble Bee Over False Advertising of ‘Fair and Safe’ Fishing Practices”, <https://laborrights.org/releases/global-labor-justice-international-labor-rights-forum-sues-global-tuna-giant-bumble-bee>; Superior Court of the District of Columbia Civil Division, Filed Complaint, INTERNATIONAL LABOR RIGHTS FORUM, d/b/a GLOBAL LABOR JUSTICE-INTERNATIONAL v. BUMBLE BEE FOODS, LLC, 2022.3.21.

71) 대법원 1995. 5. 23. 94마2218 결정; 대법원 2006. 6. 2. 2004마1148,1149 결정 등.

72) 환경권이 민법 제217조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의 권원으로 인정된 사례로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안에 거주하고 있음을 소명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가처분 신청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지역 안에 거주함을 소명하였으면 판결이 어떻게 흘러갔을까 하는 의문과 아쉬움이 남는다.

EDF와 멕시코의 사례에서 살펴본 ILO협약 169호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 역시, 국가 내 원주민과의 분쟁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비준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그 비준국 수가 적은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역시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다른 나라의 원주민에 대해 협의가 미흡함을 이유로 우리 법상 해외 원주민의 권리를 확인하기도 역시 어려울 것이다.

1.2. 향후 기후변화 관련 의무 강화의 전망

Urgenda Foundation v. State of the Netherlands 사례에서 1심은 원고에게 국제법상 권리가 직접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이러한 국제법상 권리 및 조약, 연성규범들을 국가의 의무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고 보았다. 동 사례에서 원고는 약 200페이지에 달하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법상 협약과 조약, 문서 등의 연성규범과 관련된 학술적 근거를 상세히 제시하였으며 법원 역시 자세한 분석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도출하였다.

이는 ClientEarth v. RDS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원고와 피고 및 법원은 각각 과학적 증거와 규범들의 분석을 통해 국가와 기업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비록 이 사건 가처분신청 사건에서는 피보전권리의 부정 외에도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기각되었지만, 이 사건에서 A공사와 B 은행이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됨을 고려할 때 UN 기후협약과 다양한 부속문서, 과학적 근거 등 국제법과 연성규범을 참고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상의 국가의 의무를 도출하고, 그와 더불어 정부출연 기금의 의무 또한 도출하는 방안도 향후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2. 해외 거래처의 환경, 인권 침해에 따른 본사의 책임

2.1.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의 법제화

살펴본 해외의 사례 중, Friends of the Earth France et al v. Total 및 ECCHR, ProDESC v. Electric de France 등 프랑스 기업의 해외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에서의 환경 및 인권 침해 혐의로 프랑스 내에서 본사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모두 프랑스 실사의무화 법이 제정된 후에 이에 근거하여 제소된 사례이다.⁷³⁾

이러한 공급망 실사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의 본사에 소를 제기된 사례는 넷제로 목표와 벨류체인 전반의 Scope 3 배출량 관련 사항의 괴리된 사례(Australasian Centre for Corporate Responsibility v. Santos), 지속가능성 목표 및 선언과 실제 공급망 위험이 괴리되는 사례(Myers v. Starbucks Corp., International Labor Rights Forum v. Bumble Bee Food LLC) 등과 같이 구체적 개별법을 적용하여 쟁송이 이루어진 사례이다. 따라서 공급망 실사에 관한 개별법이 제정되거나 기존의 개별법에 따라 구체적 요건을 찾아내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해외 거래처 및 공급망의 환경, 인권 침해에 대해 본사에 제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가처분신청의 사례 역시 이러한 이해에 기하여 해외 거주자의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2.2. 회사 정책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가능성

최근 유럽에서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의 제정이 논의되며, 국내에서도 공급망 실사에 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동 지침은 유럽 의회의 승인이 나지 않았으며 승인에 따른 발효 2년 후 유럽연합에 소속된 각국의 국내법 입법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2022년 연말에 통과될 경우 2024년 연말 입법 예정이지만, 계속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어 2022년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통과 2024년 시행은 무리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다수의 기관이 2024년 발효를 기정사실화하여 공급망 ESG 지원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⁷⁴⁾ 이에 국내 다수의 대기업이 공급망 ESG 실사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이 자체의 정책은 해외의 지속가능성 실사 관련 법제에서 권고하는 바와 유사하거나 더 강화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 공급망 ESG 관리 정책 등 회사의 ESG 정책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 구성원의 책임 하에 수립되고 관리되는 추세이다.⁷⁵⁾ 이 경우, 회사 자체에서 제정한 공시서류상 확인되는 공급망 ESG 실사 정책을 위반하여 해외에서 환경, 인권 침해가 이루어

73) 현재 프랑스에서는 7개의 실사의무화법 관련 경고가 기업에 전달되었으며 6개의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France's Duty of Vigilance Law", <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en/big-issues/corporate-legal-accountability/france-s-duty-of-vigilance-law/>

74) 매거진한경, "EU '공급망 실사법' 공식화...2024년 발효[ESG리뷰]", 2022.3.1.; 매일경제, "공급망 ESG 관리법 제정 韓기업도 EU처럼 서둘러야", 2022.11.10.; 매거진한경, "'공급망 ESG' 태풍 온다...기업 단위 넘어선 생태계 간 경쟁 시대", 2022.5.15.

75) 홍지연, "ESG 경영에 대한 이사회의 역할 확대", 자본시장포커스 2021-24호, 자본시장연구원, 2021; 한국ESG기준원, "지배구조 모범규준", ESG 모범규준, 2021, 83-84면; 백인규, "진정한 ESG 경영을 위한 이사회의 역할", 월간조세 08호, 조세통람사, 2021, 16-40면.

지고 그에 따른 손해가 확인될 경우 주주대표소송 또는 투자자소송 등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또한 프랑스 EDF의 멕시코 진출 사례에서 보듯이, 해외에서의 사업 중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기하여 소송을 제기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검토한 국내의 사례 역시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향후 호주 현지에서의 소송을 상정한 바, 현지에서의 소송 및 사업 중단과 그에 따른 손해발생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수익자 또는 주주의 제소 가능성

3.1. 기존 제소 가능성의 제한

국내에서 연기금의 수익자가 연금수급권에 기해 자산운용의 위험 및 수익과 관계하여 기금 자산운용을 책임지는 연기금 또는 연기금의 이사에게 제소를 한 사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자본시장에서 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경우, 법률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책임의 주체가 된다. 하지만 공적 연기금의 자산운용은 이사 및 운용자의 신인의무와 선관주의의무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의무의 충실한 이행 여부 역시 수익자가 판단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서는 주주로서의 지위와 관계가 없지만, 참고적으로 살펴보자면 기업의 이사회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역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회사법의 경우,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장기적 결과를 고려하여 회사의 성공을 촉진할 이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⁷⁶⁾ 이를 ESG 목표의 촉진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종종 확인된다. 이에 앞에서 살펴본 USSL의 이사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회사법상 이사의 의무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76) Section 172. Duty to promote the success of the company

- (1) A director of a company must act in the way he considers, in good faith, would be most likely to promote the success of the company for the benefit of its members as a whole, and in doing so have regard (amongst other matters) to—
- (a) the likely consequences of any decision in the long term,
 - (b) the interests of the company's employees,
 - (c) the need to foster the company's business relationships with suppliers, customers and others,
 - (d) the impact of the company's operations on the community and the environment,
 - (e) the desirability of the company maintaining a reputation for high standards of business conduct, and
 - (f) the need to act fairly as between members of the company.

다만, ESG를 고려하지 않아 회사에 장기적으로 손해가 예상되며 이러한 손해의 원인이 이사의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주주로서 대표 소송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확인되지 않는다.⁷⁷⁾

3.2. 향후 이사회 ESG 직접 관리 동향에 따른 책임 증가 전망

최근 대두되는 ESG 이슈와 관련하여 주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투자자와 이해관계자가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직접 ESG 이슈를 관리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이다.⁷⁸⁾ 투자자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성과 제고에 관여할 수 있고, 이사회 외의 실무자에게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주주로서의 권한을 벗어나므로 이사회에 관리를 요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수 있다. 그 외에 ESG 공시 기준, ESG 평가 지표도 이사회 ESG 직접 관리를 점점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⁷⁹⁾

이에 이사회가 ESG를 직접 관리하게 된다면, 앞에서 살펴본 이사회가 ESG 이슈를 관리함에 있어 선관주의의무의 적용 가능성도 증가될 수 있다. ESG와 관련된 안전을 충실하게 검토하지 않거나, ESG 안전의 검토에 있어 이해상충이 있는 등,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우려되거나 손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주주는 유지청구권, 대표소송 제기권 등 소수주주권을 통해 이사회에 책임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4. 지속가능성 선언과 실제의 괴리

4.1. ESG 경영 선언의 난립과 규율의 한계

ESG는 본래 투자의 지표로, ESG 경영은 다소 어색한 용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77) 회사법상 이사의 감시의무 적용범위가 ESG 리스크의 관계에 관한 학술적 논의도 보이나, 현재까지는 해외에서도 경영 리스크는 이사의 위험관리 구축의무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관찰되며 향후 ESG 경영 확산의 추이와 함께 관찰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신석훈, “최근 기관투자자의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요구 강화에 따른 회사법의 쟁점과 과제”, 상사법연구 제38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19, 1-44면; 박경미, “ESG 리스크와 회사법상 이사의 감시의무”, 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45-80면; 전준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와 이사의 책임”, 상사법연구 통권 113호, 한국상사법학회, 2022, 235-284면.

78) 각주 77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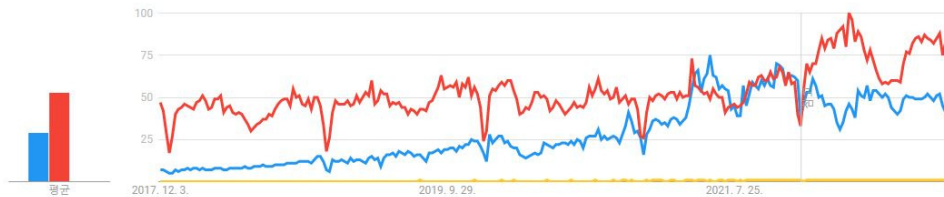
79) GRI, GRI 2: General Disclosures 2021, p.23;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초안]”, 2022, 26면; S&P Global, CSA Companion 2022, 2022; 한국ESG기준원, 앞의 자료, 83-84면; 관계부처 합동, “K-ESG 가이드라인 v1.0”, 2021, 122-123면.

에서 ESG 경영은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어온 SDGs와 지속가능성의 이슈를 경영에 통합하는 개념으로 여겨지며, 오히려 SDGs 또는 지속가능성보다 더 널리 쓰이는 용어가 되었다.⁸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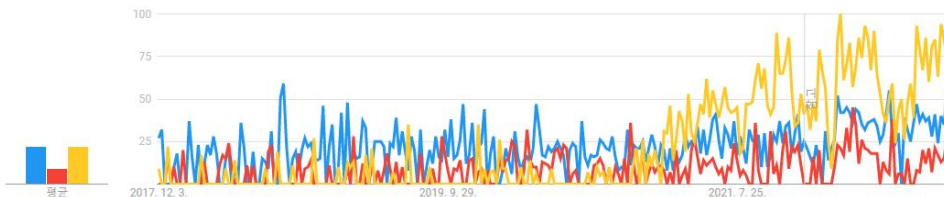
국내 대부분의 기업이 ESG 경영, 즉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경영을 선언하고 있으나, 실무 관행이 이에 합치하는지는 미지수이다. 기업의 홈페이지에 실제 상품 및 서비스보다 ESG란 단어가 지나치게 많이 보이는 경우도 종종 관찰된다. 이 사건 가치분신청에서도 A 공사는 향후 친환경 투자만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환경 및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프로젝트에 보증을 지원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A공사는 홈페이지에서 4대 전략목표 중 하나로 ESG 경영체계 실현을 제시하고 ESG 위원회와 ESG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며, ESG 공급망 자가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속가능성과 ESG 경영에 대한 다양한 목표와 성과를 제시하고 있다. C사 역시 환경경영과 ESG경영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회사의 선언적 정책과 실무 관행의 괴리를 규율하거나 이에 대해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는 관찰되기 어려웠다. 살펴본 해외의 사례에서는 대표소송, 소비자 관련 집단소송을 통해 분쟁이 제기되었으며, 미국에서는 공시서류의 허위표시가 있는 경우 증권 관련집단소송을 통해서도 그린워싱 이슈가 다루어지고 있다.⁸¹⁾ 그러나 국내에서 주주대표소

80) <그림 3>과 <그림 4>는 각각 구글 트렌드 분석으로 최근 5년간 전세계와 국내에서 SDGs와 지속가능성, ESG 경영의 검색어 동향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3> 최근 5년간 전세계 "SDGs"(청색), "Sustainability"(적색), "ESG Management"(황색) 검색어 동향



<그림 4> 최근 5년간 국내 "SDGs"(청색), "지속가능성"(적색), "ESG 경영"(황색) 검색어 동향

81) SEC, In the Matter of COMPASS MINERALS INTERNATIONAL, INC. Respondent., 2022.9.23;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v. VALE S.A., Civil Action no. 22-cv-2405, 2022.4.28. 등.

송 및 집단소송은 매우 드물다.

4.2. 향후 계약의 중요 요소로서의 법적 근거 가능성

다만, ESG 요소가 계약에 있어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으로 인지된다면, 향후 ESG 관련 사항이 민법상 계약의 착오 취소 등의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ESG 관련 선언적 정책과 실제 관행이 다를 때, 투자자가 해당 기업의 ESG에 관한 인식이 계약 여부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요소였다면 민법상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따른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인수합병 거래와 관련된 실사에서도 중요 요소가 될 것이다.⁸²⁾ 더불어 이러한 취소로 인하여 기업 또는 계약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제기도 가능할 것이다. 이는 금융소비자 및 소비자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향후 ESG 관련 사항으로 인하여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이 바뀔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되면, 그 요소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및 상장회사의 수시공시가 필요한 중요정보가 될 수 있으며 ESG 정보의 오기재 및 누락이 그에 따른 다양한 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의 ESG 관련 정책과 실제 관행이 다를 때, 정책을 보고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 공시의 허위표시에 따른 책임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이 사건 결정문에서 확인되는 국내법상의 법리와 살펴본 해외 사례는 법환경이 상이하며, 무비판적인 해외 사례의 수용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또한 살펴본 해외의 사례 중 환경 및 인권에 관한 주장이 인용된 사례도 있으나, 유사한 주장이 기각된 사례 역시 국내를 포함하여 각국의 법환경에 따라 발견될 수 있다. 특히 해외 공급망에서의 인권 및 환경 침해와 관련하여 본사에 제소한 사례는 실제 공급망 실사 관련 법률이 제정된 프랑스의 사례이기 때문에,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국내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다만 살펴본 최근의 사례는 비록 기각되었지만 기업법무 실무 및 기업 경영 실무에서 소송 예방과 대응, 위험관리의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SG 이슈가 최근 2-3년 사이 급증하면서 해외에서는 관련된 법적 쟁송과 규제 또한 급증하고 그 법리 역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해외의 변화를 주목하고 우리 기업과 관련된 법적 이슈의 전망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과 기업 모두

82) Yong Guk Lee, "Addressing ESG Issues in Cross-Border M&A Transactions - The Expanded Role of Legal Counsel -", 국제거래법연구 제31집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22, 65-66면.

해외의 자산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금융을 제공하거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ESG가 중요 요소로 인식되는 해외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현지 기업이 소송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면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 역시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는 최근 친환경을 표방하고 있으나 그 실체가 의심되는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 및 수주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주의해야 할 점이다.

특히 최근 금융회사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자로서의 위험관리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사의 책임 역시 강화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을 직접 설계하지 않는 중개, 판매자 역시 적절한 위험을 판단하여 고객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인권 및 환경 침해에 따른 소송위험 및 그로 인한 재무적인 위험은 점점 증가할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ESG와 관련한 이사회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부통제 구축 의무의 범위 역시 점점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사회는 대형 해외 프로젝트 참여에 있어 ESG 위험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 또는 기업이 넷제로, 친환경경영, ESG 경영 등의 전략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공개한 경우에는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투자 및 사업에 따른 영향이 전략 및 목표에서 공개한 바와 상이할 경우,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가 될 우려가 있다. 최근 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 정보에 관한 공시제도가 유럽에서 제정되었으며, 미국에서는 지속가능금융상품의 실제 포트폴리오 환경 영향에 관한 평가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그린워싱이 실제 투자자와 소비자의 쟁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동향을 주목하여, 특히 “친환경경영 전략”, 이른바 “ESG 전략”을 선언한 회사는 실제 투자의사결정 및 경영의사결정에서의 ESG 리스크 검토와 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1. 국내문헌

- 박경미, “ESG 리스크와 회사법상 이사의 감시의무”, 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 박시원, “기후변화와 인권침해 소송 -Urgenda 고등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환경법과 정책 제23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 배연재, “국내 기후변화 소송에서 국제규범의 역할 : 네덜란드 판결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67권 제2호, 한국국제법학회, 2022.
- 백인규, “진정한 ESG 경영을 위한 이사회역의 역할”, 월간조세 08호, 조세통람사, 2021.
- 신석훈, “최근 기관투자자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요구 강화에 따른 회사법의 쟁점과 과제”, 상사법연구 제38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19.
- 이재희, “기후변화에 대한 사법적 대응의 가능성: 기후변화 헌법소송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82-2호, 한국법학원, 2021.
- 전준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와 이사의 책임”, 상사법연구 통권 113호, 한국상사법학회, 2022.
- 홍지연, “ESG 경영에 대한 이사회역의 역할 확대”, 자본시장포커스 2021-24호, 자본시장연구원, 2021.
- Lucie Chatelain, “기업에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책임을 부과한 프랑스의 실천감독의무법”, 국제노동브리프 2021년 11월호, 노동연구원, 2021.
- Yong Guk Lee, “Addressing ESG Issues in Cross-Border M&A Transactions -The Expanded Role of Legal Counsel-”, 국제거래법연구 제31집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22.

2. 해외문헌

- ECCHR, ProDESC, TERRE SOLIDAIRE, CASE REPORT -Wind farm in Mexico: French energy firm EDF disregards indigenous rights, 2020.
- GRI, GRI 2: General Disclosures 2021.
- IEA, Net Zero by 2050 -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 Sector, 2021.
- IFC, E&S Performance Standards, 2012.
- Patricia Birnie & Alan Boyle, Catherine Redgwell in: International Law and the

218 企業法研究 第36卷 第4號(通卷 第91號) [2022. 12.]

- Environment, 3r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SEC, In the Matter of COMPASS MINERALS INTERNATIONAL, INC. Respondent., 2022.9.23.
- Shell Global, Shell confirms decision to appeal court ruling in Netherlands climate case, 2021.
- STATEMENT OF DEFENCE, ROYAL DUTCH SHELL PLC, 2019.
- S&P Global, CSA Companion 2022, 2022.
- Supreme Court of the Netherlands, ECLI:NL:HR:2019:2007.
- Superior Court of the District of Columbia Civil Division, Filed Complaint, INTERNATIONAL LABOR RIGHTS FORUM, d/b/a GLOBAL LABOR JUSTICE-INTERNATIONAL v. BUMBLE BEE FOODS, LLC, 2022.3.21.
- The Hague Court of Appeal, ECLI:NL:GHDHA:2018:2610.
- The Hague District Court, ECLI:NL:RBDHA:2015:7196.
- The Hague District Court, ECLI:NL:RBDHA:2021:5337.
- The High Court of Justice, Claim Form CR-2021-001966, 2021.10.26.
- The High Court of Justice, McGaughey v. USSL CR-2021-001966, 2022.5.24.
- The Global Compact, Who cares wins, 2004.
- The Guardian, “Dutch government ordered to cut carbon emissions in landmark ruling”, 2015.6.24.
-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v. VALE S.A., Civil Action no. 22-cv-2405, 2022.4.28.
- 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7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ROYAL DUTCH SHELL PLC., STATEMENT OF DEFENCE, 2019

3. 보고서 및 보도자료

- 관계부처 합동, “K-ESG 가이드라인 v1.0”, 2021.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초안]”, 2022.
- 한국무역협회, “EU 공급망실사지침 주요내용과 기업사례”, 2022.
- 한국ESG기준원, “지배구조 모범규준”, ESG 모범규준, 2021.
- 환경부, “기업 탄소경영 가이드라인”, 2010.

KRX, “ESG의 개념”, <https://esg.krx.co.kr/contents/01/01010100/ESG01010100.jsp>.

4. 인터넷 페이지

뉴스펍킨, “SK 호주 가스전 투자 멈춰달라” 가치분신청 기각”, 2022.5.26.,

https://www.news_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43.

매거진한경, “공급망 ESG’ 태풍 온다…기업 단위 넘어선 생태계 간 경쟁 시대”, 2022.5.15.,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205105871b>.

매거진한경, “EU ‘공급망 실사법’ 공식화…2024년 발효[ESG리뷰]”, 2022.3.1.,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202233352b>.

매일경제, “공급망 ESG 관리법 제정 韓기업도 EU처럼 서둘러야”, 2022.11.10.,

<https://www.mk.co.kr/esg/news/view/2022/1000431>.

ACCR, “Australasian Centre for Corporate Responsibility files landmark case against Santos in Federal Court”, <https://www.accr.org.au/news/australasian-centre-for-corporate-responsibility-files-landmark-case-against-santos-in-federal-court>.

_____, “Australasian Centre for Corporate Responsibility expands landmark Federal Court case against Santos”, <https://www.accr.org.au/news/australasian-centre-for-corporate-responsibility-expands-landmark-federal-court-case-against-santos>.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EDF lawsuit (re indigenous rights in Mexico, filed in France)”, <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en/latest-news/edf-lawsuit-re-indigenous-rights-in-mexico-filed-in-france>.

_____, “France’s Duty of Vigilance Law”, <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en/big-issues/corporate-legal-accountability/frances-duty-of-vigilance-law/>.

ClientEarth, “ClientEarth starts legal action against Shell’s Board over mismanagement of climate risk”, 2022.3.15., <https://www.clientearth.org/latest/press-office/press/clientearth-starts-legal-action-against-shell-s-board-over-mismanagement-of-climate-risk>.

DW, “Saudi Arabia: Greenwashing or real change?”, 2021.4.11., <https://www.dw.com/en/cop26-saudi-arabias-climate-strategy-greenwashing-or-genuine-transformation/a-59704908>.

European Commission, “Overview of sustainable finance”, <https://finance.ec.europa.eu/>

[sustainable-finance/overview-sustainable-finance_en](https://www.equator-principles.com/sustainable-finance/overview-sustainable-finance_en).

EQUATOR PRINCIPLES, “The Equator Principles”, <https://equator-principles.com>.

Equal Times, “The Saudi government wants to build a ‘city of the future’ – is it really prepared to execute those that stand in its way?”, 2022.11.28., <https://www.equaltimes.org/the-saudi-government-wants-to?lang=en#.Y6f8mNXP2Uk>.

ILRF, “Global Labor Justice - International Labor Rights Forum Sues Global Tuna Giant Bumble Bee Over False Advertising of ‘Fair and Safe’ Fishing Practices”, <https://laborrights.org/releases/global-labor-justice-international-labor-rights-forum-sues-global-tuna-giant-bumble-bee>.

Les Amis de la Terre France, “Victory! Total Uganda case: the French Supreme Court recognizes the jurisdiction of the civil court”, 2021.12.15., <https://www.amisdela terre.org/communique-presse/victory-total-uganda-case-the-french-supreme-court-recognizes-the-jurisdiction-of-the-civil-court>.

MEXICO BUSINESS NEWS, “CFE Cancels Gunaa Sicarú Wind Farm Contract in Oaxaca”, Wed, 2022.8.6., <https://mexicobusiness.news/energy/news/cfe-cancels-gunaa-sicaru-wind-farm-contract-oaxaca>

Reuters, “Australia court ruling on Santos raises risks for offshore gas projects”, 2022.2.2.,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australia-court-rejects-santos-bid-resume-barossa-gas-drilling-2022-12-02>.

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 “ClientEarth v Board of Directors of Shell”, <http://climatecasechart.com/non-us-case/clientearth-v-board-of-directors-of-shell>.

_____, “Ewan McGaughey et al v. Universities Superannuation Scheme Limited”, <http://climatecasechart.com/non-us-case/ewan-mcgaughey-et-al-v-universities-superannuation-scheme-limited>.

_____, “Milieudéfensie et al. v. Royal Dutch Shell plc.”, <http://climatecasechart.com/non-us-case/milieudéfensie-et-al-v-royal-dutch-shell-plc>.

_____, “Urgenda Foundation v. State of the Netherlands”, <http://climatecasechart.com/non-us-case/urgenda-foundation-v-kingdom-of-the-netherlands>.

The Guardian, “Dutch government ordered to cut carbon emissions in landmark ruling”, 2015.6.24.,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5/jun/24/dutch-government-ordered-cut-carbon-emissions-landmark-ruling>.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https://www.un.org/development/desa/indigenouspeoples/declaration-on-the-rights-of-indigenous-peoples.html>.

UN Environment Programme, “No Harm Rule”, <https://leap.unep.org/knowledge/glossary/no-harm-rule>

WINDPOWER MONTHLY, “EDF denies Mexican court ruling over indigenous land challenge will affect wind farm”, 2021.11.27., <https://www.windpowermonthly.com/article/1728377/edf-denies-mexican-court-ruling-indigenous-land-challenge-will-affect-wind-farm>.

〈Abstract〉

Legal dispute cases and issues of ESG-related investment contract

Yoonjae, Jang*

With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finance, the perspective of looking at ESG is being applied not only to corporate operations but also to corporate projects and project finance. It is expected that ESG risks and performance of businesses and project will become important.

Recently,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that declared eco-friendly business investment has decided to provide financing for a project in which a domestic company that advocates an eco-friendly business has recently participated in an overseas gas field development project. In this case, Legal issues were raised regarding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is paper, this case is reviewed, and reviewing below issues for the case by finding recent overseas cases that has similar issues for drawing implications for Korean companies. First, I examined whether it is possible to directly raise a problem with a company or financial institution about the wide-area air pollution caused by carbon emissions and climate change caused by it, and how to sue a domestic company with issues of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in a company's overseas business. Next is whether a beneficiary of finance or a shareholder of a company can file a suit against the impact of the business, and whether a declaration related to the sustainability of a company is inconsistent with actual practice(So called "Green Washing").

Examining the above issue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limit to claiming and winning legal disputes under the current Korean law. However, as the number of companies claiming "ESG management" increases, the issue of greenwashing will also increase, and as the board of directors directly manages ESG in accordance with the demands of stakeholders, the possibility of raising

* Ph.D. in Law, Head of ESG Research, Shin&Kim LLC

issues with the board of directors is likely to increase. In addition, as ESG issues gradually expand and their importance to investors and stakeholders increases, ESG issues may develop into an material condition of contracts for legal dispute.

📌 주제어(Key Words)

ESG, 지속가능성, 지속가능경영, 공급망, 그린워싱, ESG워싱

ESG, Sustainability, Supply chain, Value chain, Green washing, ESG washing

논문투고일자 : 2022년 12월 07일

심사의뢰일자 : 2022년 12월 16일

게재확정일자 : 2022년 12월 25일

DOI : 10.24886/BLR.2022.12.36.4.187